



월
간

두 임 누리 회 보

www.duem.or.kr

제16호 2004년9월21일

발행인 김 상 원
편집인 손 이 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1동 1440-1국제B/D301호
사단법인 한국부산물비료협회
전화 02/522-4260~1 FAX 02/522-4383

가축분뇨의 액비 자원화

지난 8월 10일자 주요일간 신문에 기사화되어 문제가 되기 시작한 축산분뇨 자원화 유해비료 파문은 우리나라에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현재 농림부가 계획하고 있는 축산분뇨 액비화사업은 축산분뇨를 자원화 함으로써 땅 힘을 높이고 축산분뇨 이용가치도 극대화 하자는 취지에서 농림부가 중점추진 중인 대표적 친환경 농업정책이다.

하지만 그 세부적이 실행 계획이 부실하여 심각한 2차 환경오염은 물론 분야간 갈등마저 유발시킬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축산분뇨는 오수분뇨 및 축산분뇨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처리대상 물질이나 액비화는 이 법에서 인정하는 처리 방법도 아니고 비료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제조방법도 아니다. 단지 자급자족형태의 농업을 하는 일부 농가를 위해 일정기간 저장 후 자가 농지에 사용하는 경우를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일부 예외 조항을 활용하여 많은 농가 특히 양돈 농가에서 축사구조 자체를 분과 뇨를 함께 섞어 스러리 상태로 저장할 수 있는 스러리 돈사로 개조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스러리 돈사는 돼지 사육장 바닥을 모두 저장 탱크로 하여 축산분뇨로 보관하는 방식으로 별도로 처리과정이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관리상 커다란 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관된 막대한 량의 축산폐수는 결국 어떠한 방법으로도 처리하기 곤란한 상태로 만들어 진다. 결국 해양투기나 농지투입이 가장 편한 방법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중 농지에 뿌려질 경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반드시 각 지방 농업기술센타가 발급하는 액비시방서에 의해 살포 또는 폐기 여부가 결정되게끔 되어 있다. 결국 돈사 구조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렇게 해서라도 처리로 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다.

이제 공정규격이 만들어지면 명실공히 비료관리법상 부산물비료 중 가축분뇨 발효비료(액)으로 정식 비료의 한 종류가 된다.

진흥청에서 주체한 설명회자료를 보면 공정규격 외에 비고란으로 하여 저장 기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발효기간은 충분한 발효시 까지 저장으로 되어 있고 호기성 발효의 경우에만 산소 주입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저장시설 용량은 200M/ton이상으로 되어 있다.

이제 이 기준만 갖추면 그 곳을 통과한 물질은 처리 대상물질인 축산폐수에서 비료로 바뀌는 것이다.

사용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농업기술센타에서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제조물 책임법상으로 보면 사용 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모든 책임은 오염물질 배출자인 축산농가에서 사용상 부주의에 대한 책임은 소비자인 사용농민에게로 제조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방서를 발행한 지방 농업 기술센터로 그 책임의 주체가 바뀌게 된다.

그리고 한가지 같은 축산 분뇨를 자원화 하는 분야로서 걱정되는 것이 있다. 지난 1992년 당시 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퇴비화 방법을 정식처리 방식으로 인정받으면서도 그러했다. 정책지원사업으로 시행하며 농협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동처리장 형태로 처리시설을 늘려 나갔다. 그러나 시행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시설 설치 후 운영이 문제되자 시설 지원대상을 영농조합법인까지 확대하여 전국에 200여 곳에 시설을 설치하였다. 그 당시 기존에 정부지원 없이 부산물비료사업을 하던 일반 업체를 무시하고 정책 사업으로 시행한 것이 기존 업체와의 갈등으로 이어져 현재 생산자 단체가 두 곳이 된 결정적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이제 우리는 그간 그러한 우여곡절 끝에 축산분뇨를 퇴비화 하여 공급하며 농협중앙회 등과 공정 규격 외에 시설 기준 등을 엄격히 설정하며 품질관리를 하여 축산분뇨 자원화에 온 힘을 기울여 왔다.

그동안 과도한 수분 규제 등 기존 업체들의 고생이야 이미 지난 과거사이니 새삼 그것을 들먹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새로이 시행되는 정책사업은 또 다시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훌륭하게 성공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길 바랄 뿐이다.

어차피 국내에서 배출되는 축산분뇨의

재활용 비율을 보면 아무리 많이 보아도 35%선을 넘지 않는다고 본다. 현재 축산분뇨 액비화는 지금까지 재활용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축산분뇨 자원화에 오히려 힘을 보태고 싶다.

오직 염려되는 것은 국제기준 등으로 친환경 농업에 소요되는 비료가 축산 분뇨를 혼합한 제품을 기피하고 있으며 단지 축산 분뇨를 섞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입 자재가 주를 이루는 유기질 비료에 밀려 위축되는 상황에 축산분뇨를 원재료로 하는 부산물 비료 전체에 나쁜 이미지가 더해 지지나 않을까 염려되는 것이다.

2005년도 농협납품 지정업체 운용기준 변경

1998년부터 시행된 이 운용기준은 해마다 소비자 만족위주로 조금씩 수정 보완되어왔다. 그중 내년부터 적용되는 기준은 그동안 어느때보다 큰 폭으로 수정 보완된다. 곧이어 공식문서로 발송될 예정이나 그 내용을 미리 알아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생산업체 지정기준 강화

□ 일반 생산업체

○ 지정서 유효기간 변경 : 업체당 1회당 지정 ⇒ 격년마다 신규지정

○ 생산시설중 선별기(자석부착) 시설설치

○ 격년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또는 본회주관 퇴비생산관련 교육이수

○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출하일지, 자체 검사일지 작성보존('05부터 적용)

□ 우수 생산업체

○ 최근 3년간 농협납품실적 3억원 이상 (1억원 ⇒ 3억원)

- 최근 2년간 생산능력 범위 내에서 생산
- 그린퇴비 등록업체로 전년도 생산실적이 500톤 이상
- 후숙시설을 퇴비와 그린퇴비로 구분 운영

2. 지정업체 권리 및 의무

- 우수업체의 권리(일반지정업체 제외)
 - 농협지정 우수생산업체 품질검사 결과 주성분 및 기타규격 미달시(유해성분제외) 2년간 1회에 한하여 추천기관이 연서한 경위서를 제출하고 중앙회가 지정하는 품질검사기관의 매 분기 말 기준 품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지정해지 유예

□ 의무

- 2년 주기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또는 농협중앙회 주관 퇴비생산 관련 교육 이수
- 원료수불부, 생산일지, 출하(판매)일지 및 자체검사 일지 기록보존
- 생산능력 범위내 납품(OEM 생산납품 불가)
- 추천기관에서 주관하는 상·하반기 품질검사에 응하고 검사비용 부담(검사비용은 추천기관과 업체협의 결정)
- 비료 포장대의 보증표에 원료투입비율, 생산연월일, 주의사항을 반드시 표기하고 이물질 제거를 위한 선별기와 자석 가동
- 원료와 제품에 대한 자체 품질검사 및 중량검사 강화

3. 중점관리 대상업체 선정 및 관리

□ 대상업체

- 기존 품질검사 결과 적발업체
- 생산능력 대비 과다 생산업체
- 도축잔재물, 음식물쓰레기 등 폐기물처리를 겸한 업체

□ 중점관리

- 품질검사 등을 통한 집중관리와 지정기준 미달시 지정해지

4. 추천기관 의무사항

- 각 추천기관에서 추천하여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년 2회(춘추기)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협중앙회에 통보
 - 추천업체 업체별 생산능력 조사책정하고 농협중앙회에 통보
 - 추천기관이 추천서류 허위작성 또는 부적합한 업체를 추천하여 민원야기 등 물의를 일으킨 경우 추천권 회수

5. 지정업체 해지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 처분 해당 검사 성적서 발급시 해당 비종별(그린(1급)퇴비, 퇴비) 제재조치
- 추천기관, 본회, 행정기관 주관 품질검사에 대하여 년 2회 이상 불응(시료 미발취 등)할 경우 지정해지
- 추천기관의 허위서류 작성 등으로 지정되었거나 지정기준의 시설 미가동 업체 : 지정해지
- 원료투입비율, 생산일자,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허위표기 또는 미표기 : 1년간 지정해지
- 우수생산업체로 지정된 업체가 퇴비 또는 그린(1급)퇴비가 품질기준 미달시 : 우수업체 지정해지

6. 경과조치

- '04년 지정업체중 퇴비생산관련 교육 미이수 업체는 '05. 9월까지 교육을 이수하고 추천기관을 경유하여 농협중앙회에 제출
- 추천기관은 '05. 10월 5일까지 추천사의 교육수료증과 비료포장대 1매를 농협중앙회에 제출로 되어있다.

이중 우리가 유의해야할 제일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정 신청서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지정신청서에 실태 조사서가 있다. 이는 이전까지는 신청내역서로 신청하는 업체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고 추천기관은 전혀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것은 기재내용이 잘못된 부분은 작성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였다. 이것이 실태 조사서로 바뀐 것은 지정업체 추천과 함께 추천업체에 관한 모든 사항은 추천기관인 협회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인 것이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협회와 회원은 따로가 아니다 이 사업을 영위하는 한 한 몸인 것이다. 이제 업체 하나하나가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된다. 나 이전에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먼저 갖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바뀌는 규정을 놓고 왜 농협규정에 끌려만 다니느냐는 불만을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생산업체인 우리는 판매를 위한 유통 단계를 생각한다면 소비와 유통을 함께 해결해 주는 농협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대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실익 없이 일방적 통행은 생산과 소비라는 상거래 원칙에도 어긋난다. 다시 말해 실익 면에서도 우리는 분명 실보다는 득이 많은 거래 관계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오히려 농협을 소비자의 입장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더욱 편하게 대해주어야 할 위치가 아닌가 싶다. 농업개방을 앞두고 국내 농업분야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더해갈 것이다. 특히 퇴비분야는 축산분뇨가 액비화 처리를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고 유기농업 쪽에서는 공장형 축사에서 나오는 축분을 재료로 사용한 퇴비는 사용을 기피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유기질비료는 마치 유기질 비료만이 친환경 농업을 할 수 있는 비료인양 활개를 치고 있다.

앞뒤를 보아도 모두가 어려운 상황뿐이다. 우리는 이럴수록 힘을 뭉쳐 살아갈 길을 찾아 총 매진해야 할 것이다.

도 지회 소식

지난 9월11~12일에는 강원도지회연합

대회가 있었습니다. 작년과 같이 옥계해수욕장 옆 금진항에서 일박을 하며 강원도내에 회원사들의 단합된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김상원 협회회장을 비롯하여 엄기만 강원지회장님과 도내 모든 업체가 참석하여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등 생산 기술에서 판매까지 다 방면으로 정보교환도하고 우의도 다져줍니다. 특히 선진지 해외 견학에 관한 의견이 있어 협회차원에서 신청자를 모집하여 추진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사고 팝니다

구합니다. 중고 압롤박스(24m²)
연락처 031-342-8828이나 협회

모든 회원사가 참여하는 소식지가 되기 위하여 김 상원 회장이 제안한 의견입니다. 공장을 운영하다 보면 각종 시설이나 장비 등을 자주 교체하게 됩니다. 사용하다 필요 없게된 물건이 있으면 서로 간 지면을 통해 알려 교환하거나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소식지 고정란으로 만들고자 하오니 필요하신 회원사께서는 협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업체 실태조사

전체 업체 농협납품 재 지정 업무와 관련 업체 실태조사관계로 방문드릴계획이오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같이 보내드리는 신청서 양식은 모두 작성하여 10월2일까지 협회로 도착할 수 있게 서둘러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시 꼭 현장에 없으셔도 관계없으니 연휴기간 중이라고 전화연락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